

대한상의 브리프

법무법인 바른 김미연 변호사



제 141호 2021년 2월 1일



식품접객업소의 옥외 영업이 전면 허용됐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식품위생법상 달라진 점과 영업자가 유의할 점을 관련 분야 최고 전문가(김미연 변호사)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편집자주 [외부 필진 칼럼은 대한상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테라스 영업 전면 허용... 골목 사장님들 체크포인트는?

코로나로 꽁꽁 얼어붙은 외식업 소상공인에게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 나왔다. 옥외 영업이 올해부터 원칙 허용돼 국내에서도 뉴욕, 파리와 같은 테라스 음식점과 루프탑 카페가 늘어날 전망이다.

작년 한 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외식업계는 고난의 시간을 겪었다. 9시 이후 식당 영업 금지, 카페 등의 매장 내 이용 제한 조치로 자영업자들의 경영난은 더욱 심화됐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숙박·음식업종의 부채비율은 지난해 3분기 기준 200%를 초과해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 소상공인에게 기쁜 소식이 날아들었다.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이 옥외 장소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2021. 1. 1. 전격 시행됐다.

그동안 옥외 영업은 특별히 허용된 지역·장소에서만 가능하도록 규제해 왔고 옥외 시설의 기준도 지자체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였는데, 이번 규칙 개정으로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 영업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 옥외 장소를 영업장으로 신고하여 음식류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21. 1. 1. 시행)]



종전 규칙

- 관광특구, 호텔, 지자체장 지정 장소로 한정
- 옥외 시설의 기준은 지자체장이 따로 정함
- 영업장 신고면적 외 옥외 등에서 음식 제공



개정 규칙

- 실내 영업장과 연결하는 외부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면 일반적으로 허용
- 손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시설·설비·기구 설치
- 옥외 장소도 영업장 면적에 포함

테라스 영업 하실 때 기억하세요!

개정 규칙에서 정한 옥외 영업 가능 요건은 ①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옥외 장소가 실내 영업장과 연결하는 장소여야 할 것 ② 옥외 장소에 대한 사용권한이 있어야 할 것 ③ 관계 법령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시설을 설치해야 할 것이다.

① 옥외 장소와 실내 영업장의 연결

우선, 옥외 장소와 실내 영업장이 직접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테라스 영업을 실시할 장소가 기존 실내 영업장과 보도, 도로 등을 두고 떨어져있을 경우 테라스 영업은 불가하다. 서로 다른 층인 경우(루프탑 등) 위·아래층으로 옥외 영업장에 직접 출입이 가능하면 영업을 허용된다.



② 옥외 장소에 대한 사용권한

테라스 영업을 희망하는 사업자의 경우 옥외 장소에 대한 소유·임차 등 사용권한이 있어야 한다. 자영업자의 임대차계약서는 실내 공간에 대하여 작성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이와 별개로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옥외 장소 사용을 승낙했다는 서류가 필요하다.

집합건물의 경우, 개별 집합건물의 관리규약 등에 따라 구분소유자·임차인 등이 해당 옥외 장소에 대한 전용사용권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③ 전면공지에서 가능 다른 법률에 의한 사용제한 여부 확인

영업자는 희망 옥외 영업 장소가 건축법상 사용이 제한되는 장소인지 확인해야 한다. 소위 ‘전면공지’(건축선 등의 지정으로 도로 경계선과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공지)는 가능하지만, ‘공개공지’(일정 용도·규모의 건축물의 소규모 휴식 공간)는 옥외 영업장으로 사용할 수 없다. 안전문제로 인해 건축선으로부터 의무적으로 띄워야 하는 부지에는 옥외 영업장 설치가 불가하다(지자체 조례 확인 필요).

이 외 주차장법상 의무면적 이상의 주차장을 침범한 경우, 소방법상 화재 예방을 위한 피난 시설 등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한 경우 옥외 영업은 금지된다. 도로 및 보도를 활용한 테라스 영업도 가능하나, 이 경우 도로법에 따른 지자체의 점용허가증이 필요하다.



주차 시설
옥외 영업
금지



소방 시설
옥외 영업
금지

대한상의 브리프

대한상공회의소가 회원님께 드리는 최신 경제정보

④ 영업면적 변경 신고

또 옥외 공간이 식당의 영업면적 내에 포함돼야 한다. 가령 기존 10평 규모의 식당을 운영하던 자영업자는 옥외 영업장에 해당하는 5평을 영업면적으로 포함해 15평의 영업장을 운영하는 구조다. 따라서 영업자는 필요서류를 갖추어(구청 등에서 안내) 신고관청에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규칙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관광특구, 호텔, 지자체장 지정 장소의 옥외에서 음식 등을 제공하고 있는 영업자 역시 2021. 7. 1.까지 옥외 장소를 영업장 면적에 포함시켜 변경신고를 끝마쳐야 한다.



신규업장 | 영업신고 시 옥외 영업장 면적을 관할 관청에 신고

기존업장 | 영업신고증에 옥외 영업장 면적을 기재해서 변경

※ 참고 : 스페이스비즈

테라스, 루프탑 등의 시설 기준은?

테라스에는 고정식이 아닌 이동식의 간단한 편의 시설만 설치 가능하다. 간혹 야외 업장에 움직일 수 없는 테이블, 의자 등을 놓고 영업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식당의 영업시간이 종료되면 옥외 시설에 설치했던 테이블, 의자 등을 실내 또는 눈에 띄지 않는 장소로 치워야 한다.

루프탑 카페 등에서 영업을 할 경우 옥상 및 2층 이상의 노대(발코니)에는 높이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낙상 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 난간의 창살 간격을 촘촘히 해야 하며, 어린이 등이 올라갈 수 없도록 주의 표식이 설치돼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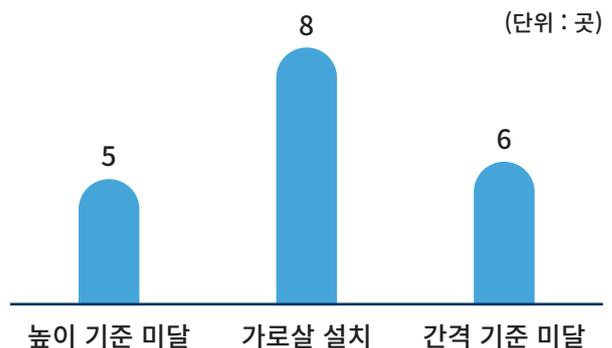


[루프탑 영업 시설 안전관리 문제점]

루프탑 안전관리 허점

- 01 일부 지역만 법적으로 허용
- 02 대다수 업소가 불법 영업
- 03 적합한 기준 제시되지 않아
- 04 관리·감독 이뤄지지 않아

루프탑 난간 설치 실태



※ 자료 : 더스쿠프(서울시 22개 업소 기준, 중복포함)

또한, 화재 등에 대비하기 위해 옥외 시설에서의 취사행위(고기 굽기) 등은 금지되고, 화재 발생의 위험이 있는 촛불, 난로 등의 설치를 금지한다. 또한, 눈·비 등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테라스를 밀폐하지 않아야 한다. 겨울철 옥외 영업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비닐이나 천막 등으로 테라스를 막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의미다.

옥외에서 나온 폐기물은 옥내 시설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하고, 옥외 영업장에서의 흡연, 소란 행위 등은 금지된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옥외 영업장을 포함한 식당의 영업장 면적이 100㎡ 이상인 경우 재난보험 가입 의무가 부여된다.

지역경제 활성화, 코로나 방역... 1석2조 효과를 기대한다.

보행자의 통행이나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옥외 영업을 허용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방역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은 낡은 법과 제도를 조금 달리 보면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는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불법이던 옥외 영업장을 활용한다면,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공간을 넓게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수도권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A씨는 “민원으로 막아 놓았던 루프탑과 1층 테라스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장 내 이용 인원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테라스 영업을 통해 수용 인원을 늘릴 수 있게 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또한, 외식업 스타트업 대표 B씨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밀폐된 실내가 아닌 탁 트인 공간에서 식사하고 싶어 하는 손님들의 요구가 늘어났다”며 “이 같은 정부의 규제 철폐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감염 우려로 밀폐된 공간을 꺼리는 시민들의 수요도 맞출 수 있을 전망이다. 코로나로 집단 감염 위험성이 큰 밀폐, 밀접, 밀집 등에 대한 경계가 확산되면서 테라스, 루프탑 등의 수요가 상당하다.

이미 외국에서는 코로나 대응책으로 식당의 실외 영업만을 허용하는 지침을 내기도 했다. 실제 미국 뉴욕, 뉴저지 등은 식당의 실내 영업은 금지하는 대신 옥외 영업만 허용하고 있다.

이번 옥외 영업 허용은 소비자에게 쾌적한 먹거리 환경을 제공하는 동시에, 살인적인 임대료에 허덕이는 소상공인을 구제하는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다. 변경된 제도가 적극 활용되어 침체된 외식업계에 활기를 불어넣기를 바라며, 영업자들도 준수사항을 잘 지켜 모범적인 테라스 환경을 만들어나가길 기대한다. 🌟

국내·외 경제지표

2021년 2월 1일 기준

1. 국내·외 경제성장률

(단위 : %)

	2019	2020 ^(E)	IMF		OECD	
			2021 ^(P)	2022 ^(P)	2021 ^(P)	2022 ^(P)
한국	2.0	-1.1	3.1	2.9	2.8	3.4
세계	2.8	-3.5	5.5	4.2	4.2	3.7
미국	2.2	-3.4	5.1	2.5	3.2	3.5
중국	6.1	2.3	8.1	5.6	8.0	4.9
일본	0.3	-5.1	3.1	2.4	2.3	1.5
EU	1.3	-7.2	4.2	3.6	3.6	3.3

* E -잠정치(Estimate) / P -예상치(Projections)

2. 환율·유가¹⁾

(단위 : 원(환율), 달러(유가))

	2018	2019	2020	'20.8월	9월	10월	11월	12월
원/달러	1,100	1,166	1,180	1,187	1,179	1,145	1,117	1,095
원/엔(100엔)	996	1,070	1,105	1,120	1,116	1,088	1,069	1,055
원/위안	166.4	168.6	170.9	171.1	173.0	170.5	169.1	167.6
원/유로	1,299	1,305	1,346	1,403	1,391	1,348	1,321	1,332
유가(Dubai)	69.7	63.5	42.3	44.0	41.5	40.7	43.4	49.8

3. 산업지표

(단위 : %(전년동기대비))

	2018	2019	2020	'20.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산업생산	1.6	0.6	-0.8	-3.4	3.4	-2.6	-0.6	-0.3
소매판매	4.3	2.4	-0.2	0.3	4.4	-0.1	-1.5	-2.0
설비투자	-3.6	-6.2	6.0	-1.6	17.0	-0.9	5.7	5.3
수출	5.4	-10.4	-5.4	-10.3	7.2	-3.8	4.1	12.6
수입	11.9	-6.0	-7.2	-15.8	1.6	-5.6	-1.9	1.8

1) 환율은 월 평균 기준, 유가는 기말 기준